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,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(안 제25조제6호 신설)
- 나. 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(안 제25조 개정)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중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림청장”을 “관세청장, 산림청장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29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9조제2항”을 “법 제29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9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29조제2항제1호”로, “법 제29조제2항”을 “법 제29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7조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다목 중 “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29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(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)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권한의 위임)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<u>산림청장</u>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	제25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<u>관세청장, 산림청장</u> , -----.
1. 법 제2조제1항·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·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법 제29조제3항에 따른</u> -- ----- ----- 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(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)과 이와 관련한 <u>법 제29조제2항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9조제3항-</u>

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권
한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
다.

4.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
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
태료의 부과·징수권한 중 주
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
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
부과·징수권한은 시·도지사
에게 위임한다.

5. 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·도
지사에게 위임한다. 이 경우
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
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
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
다.

가. (생략)

나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
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
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
한중 도·소매업에 관한
권한

다.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
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
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

--.

4. 법 제29조제2항제1호-----
-- 법 제29조제3항-----

-----.

5. -----
-----.

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법 제7조에 따른 -----
----- 법
제16조제1항에 따른 ----

다. -----
--- 법 제29조제3항에 따
른 -----

• 징수권한

<신 설>

6.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보세구역 내 수출입 물품(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)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2939